2-19	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개정	행안부장관·해경청장

□ 권고 내용

○ 행정안전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은 유·도선 선사가 자체적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**선사 내 안전관리자를 지정**하고, 운영·관리기관의 유·도선 안전관리 업무가 지속적이고,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**유·도선 안전감독관제도의 운영 근거**를 마련하기 위한 **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을 개정**하기 바랍니다.

□ 이행 현황

○ 해양경찰청-행정안전부, 유도선 안전혁신 TF회의* 개최결과에 따라**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일부 개정안 발의**

*「유도선법」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해경청-행안부 TF회의 2회 개최('18. 4. 12. / '18. 5. 25.)

< 유도선 안전혁신 TF회의(해경청-행안부) 개최 경과 >

연번	개최일자	주요내용	참석자
1	2018. 4. 12	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상황 등	해경청(3) 행안부(2), 협회(3) 등 10명 내외
2	2018. 5. 25	유도선업 일부개정안 이견 의견토론,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사항 공유 등	해경청(2), 행안부(3), 해수부(3), 지자체(4)

- (**주요내용**) **"안전관리자" 지정.운영 제도 도입**(안 제21조의2 신설)

  * 업체별로 "안전관리자"를 지정토록 하고,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, 직무범위, 자격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

  ※ 안전감독관 제도는 안전관리자 지정제도 도입·운영 이후에 성과분석을 통해 추진 여부 검토

- (**추진경과**) '21대 국회 회기 종료('24.5.29.)에 따라 계류 중이던 개정법률안 폐기, '22대 국회 재입법 추진*('24.5.21.~)

  * 입법예고('24.5.21.~31.), 국회 발의('24.7.12.), 행안위 소위 상정('24.11.20.), 행안위 소위 계류 중(~현재)

□ 향후 계획

○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개정 관련 국회 대응('26.8월~)